

7.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 1998-555호 1998. 11. 26

개정이유

외국인이 토지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에도 외국인의 임대사업등록을 허용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정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의 매각시행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 임대주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현행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내국인, 재외 국민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주택임대사업은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허용,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주택임대사업의 활성화 도모.
- 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임대 개실일부터 10년, 20년으로 구분.
-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가격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매각가격산정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함.
- 라. 임대주택의 임의 매각허용에 따른 매각 및 신고절차를 정함.